

#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50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김형재, 강석주, 김규남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춘곤, 김태수,  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 
문성호, 민병주, 신복자,  
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  
이성배, 이종환, 임춘대,  
정지웅, 최민규, 허 훈,  
홍국표 의원(25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재 굴착공사 시 흙막이 가시설 및 지반안전성의 검토를 위해 스마트 계측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에 따른 건축공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이외의 지하개발 공공공사 흙막이 계측관리에 스마트 계측을 적용함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- 이에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스마트 계측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의3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“흙막이 계측관리”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,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오차나 설계,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,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10. “스마트 계측”이란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, 데이터 처리,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을 말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흙막이 스마트 계측관리)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“흙막이 계측관리”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,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오차나 설계,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,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</p> <p>10. <u>“스마트 계측”이란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, 데이터 처리,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을 말한다.</u></p> <p>제12조의3(<u>흙막이 스마트 계측관리</u>) <u>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지하개발 사업자에게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흠막이 계층관리를 스마트 계층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    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